

2008.11.21(금) 11:00

第132回 忠州市議會(臨時會)

第5次 本 會 議

條例案審查報告書

- ① 충주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② 충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- ③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議會運營委員會

條例案審查報告書

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[1] 충주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008.11.11	2008.11.11	2008.11.17	2008.11.17	김 경 숙 의원
[2] 충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	"	"	"	"	김 경 숙 의원
[3]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	"	"	"	"	김 경 숙 의원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충주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현행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연구하면서 확인된 일부 부적합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

2)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함(안제2조제3호)
 - 법 제104조 내지 107조 ⇒ 법 제113조 내지 116조

3) 기타 참고자료 : 지방자치법 제22조

나. 충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) 제안이유

현행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연구하면서 확인된 일부 부적합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

2)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함 (안제1조)
 - 법시행령 제24조 ⇒ 법시행령 제60조

3) 기타 참고자료 :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

다.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) 제안이유

현행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연구하면서 확인된 일부 부적합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

2) 주요내용

- 표결방법에 있어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 표결토록 되어 있는 것을 이의 없다고 인정 할 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의가 있을 때 표결하도록 현실에 적합하게 함(안제45조제3항)

-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보다 현실적으로 적합하게 정하도록 함(안제5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충주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본 조례안은 충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제2조 범위에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
- 조례 제2조 제1호에 부시장
제2호에 국장, 담당관·과장급
제3호에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으로 규정되어 있음
- 제3호에서 지방자치법 제104조는 보건치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등이고
지방자치법 제105조는 사업소
지방자치법 제106조는 출장소
지방자치법 제107조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규정하는 것임
- 2007.5.11일 지방자치법이 가지조항 정비 등 전부 개정되면서
지방자치법 제104조가 제113조로

지방자치법 제105조가 제114조로
지방자치법 제106조가 제115조로
지방자치법 제107조가 제116조로 변경되었음

-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2008.3.20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관련조례를 일괄 개정한바 있으며 누락된 것을 이번에 발췌하여 안 제2조 제3호의 “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”를 “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”로 개정하려는 사항임

나. 충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- 본 규칙안은 2007. 10. 4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조례에 적용하는 관련규정을 바뀐 조항으로 개정 하려는 사항임
- 의회에 청원을 하고 처리하는 관련법규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는바 지방자치법 제8절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청원서의 제출, 청원의 불수리, 청원심사처리,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조항임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 운영규정에서 “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
- 따라서 충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조 목적에서 “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

- 2007.10.4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가지조항 정비 등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가 제60조로 변경되었음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2008.3.20일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관련규칙을 일괄 개정한바 있으며 누락된 것을 이번에 발췌하여 규칙안 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”를 “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”로 개정하려는 사항임

다.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- 본 규칙안은 운영중인 회의규칙의 일부 문구가 누락 또는 오기로 현실과 맞지 않게 관리되던 것을 문구의 세심한 검토 및 타 자치단체의회 회의규칙과 비교 검토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임
-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절은 제42조부터 제48조까지 표결의 선포, 표결의 참가, 의사변경의 금지, 표결방법, 투표 절차, 수정안의 표결순서, 표결결과 선포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음
- 그 중 제45조 표결방법 제3항에서 “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.”고 규정되어 있음
 - 제1항은 표결을 할 때 기립 또는 거수의 방법
 - 제2항은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
-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안건의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의가 있을 때 표결하는 것이 순리이며 그렇게 운영하고 있음

- 현행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 1항 또는 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타 의회 회의규칙과 비교분석한바 일부 문구가 빠져 있는 것으로 여겨짐. 따라서 빠져있는 문구를 삽입하여 “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.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.”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
-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장 위원회 관련 조항 중 제53조(의사 일정과 개회일시)에서 “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정한다.”고 규정되어 있음
- “정정한다.”란 뜻은 잘못된 것을 “고친다.”라는 의미로 본 조항에서는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“정한다.”라고 표현해야 옳은 것으로 판단 세심한 검토와 타 의회 회의규칙과 비교 검토하여 “정정한다.”를 “정한다.”로 개정하려는 것임

4. 질의 · 답변 요지

가. 충주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◎질의 : 없음

나. 충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◎질의 : 없음

다.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◎질의 : 없음

5. 심사결과

가. 충주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
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
나. 충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: 원안가결

다.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: 원안가결

6. 붙 임

가. 충주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.

나. 충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

다.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 끝.